

의안번호	2202601
의 퇴 인	서영교의원
회 답 일	2024.10.28.
추 계 번호	24D2588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 제1항·제3항 (금속화재 소방 시설) 신설	제1항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“금속화재 소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함 1. 배터리(리튬이차전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·조립·수입·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2. 배터리 제조 공장 및 보관 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 3. 그 밖에 리튬, 나트륨, 칼륨 등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의 제조 공장 및 보관 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 제3항: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1조의2 제4항 (금속화재 소방시설) 신설	소방청장은 제18조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제1항·제3항(금속화재 소방시설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의2제4항(금속화재 소방시설) 신설	소방청에 따르면,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연평균 3회 개최되며 금속화재 소방시설 관련 화재안전기준 마련 시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 할 것으로 예상

Ⅲ. 미첨부 사유

□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설치와 정기 확인(안 제11조의 제1항·제3항 신설)

- 개정안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·조립·수입·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, 배터리 제조공장 및 보관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 등이 금속화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
-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에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설치,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정기 확인을 위한 인력 증원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금속화재는 마그네슘, 칼륨, 리튬, 나트륨, 지르코늄 등 금속물질에 의한 화재로 물 또는 수계소화약제를 사용하면 폭발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시켜 위험함
 - 금속화재 소화방법으로는 마른 모래, 팽창질석, 팽창진주암 등으로 질식소화시키거나 전용약제가 든 특수소화기를 사용
-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등의 수량, 해당 전기자동차의 소방시설 비치 여부, 금속화재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기 확인 수행 시 인력 증원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21,071대(국토교통부 자료)이고 배터리 관련 공장은 413개소(소방청 자료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